즉시접수	당일접
	ac.or.kr
제출자	www.kld
총	건

구분건묵소유권보존등기신청

접	년	월 일	처	접수	기 입	교 합	각종통지
수	제	호	리 인				

부동산의 표시

등기	의 목적	소유권 보존			
신청	근거 규정	부동산등기법	제65조	제1호	
구 분	성 명 (상호·명칭)	주민등록번호 (등기용등록번호)	주	소 (소 재 지)	지 분 (개인별)
신					
청					
인					



	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							
부동산 표시	부동산별	시가표	준인]	부동산병	별 국민주	택채권매입금액	
1.	그			원	급		원	
2.	급			원	급		언	
3.	그			원	금		원	
국민주택	채 권 매 입 총	등 액			급		원	
국 민 주 택	채 권 발 행 변	<u>호</u>						
 취득세(등록!	[원	지 병) 교육서	레 금	원	
	근의계/ ㅁ		긴	농어	촌특별서	레 금	원	
세 액	합 계		금				원	
			금				원	
등 기 신 청	수 수 료	납부번호: 일괄납부: 건					ما	
						1	원	
. 치드세/드로	천 면허세)영수필확약		부 통	서 <기티	면 >			
				\/ \				
	수료 영수필확인	서	통					
• 집합건축물1	대장등본		통					
• 주민등록표	등(초)본		통					
• 위임장			통					
		Ļ	년	<u></u>	<u> </u>	Į		
위 신기	청인				(1)	(전화:)	
(또는					(전화:)		
					귀중			
지방법원						., 0		

- 신청서 작성요령 -

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 2.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.



별	지



구분건묵소유권보존등기신청

접	년	월 일	처	접 수	기 입	亚	합	각종통지
수	제	호	인					

① 부동산의 표시

벽지기재안 같은

2	등기의 목적	소유권 보존	
③ 신청 근거 규정		부동산등기법	제65조 제1호
구 분	성 명 (상호·명칭)	주민등록번호 (등기용등록번호)	주 소 (소 재 지) 지 분 (개인별)
④ 신 청 인	이 대 백	XXXXXX-XXXXXXX	서욱특벽시 서초구 서초대 호 88긴 10, 가동 101호 (서초동, 샛벽아파트)



⑤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							
부동산 표시	부동산별	시가표준의	4	부동산별	국민주택채권	매입금액	
1. 주 택	금		원	그		원	
2.	금		원	금		원	
3.	급		원	급		원	
⑤ 국 민 주	택채권매위	입 총 액		금		원	
⑤ 국 민 주	택 채 권 발 형	행 번 호					
	= H -1 J)		⑥ 지방교육세금○○,○○○원				
(6) 취득세(등·	록면허세) 금〇〇	0,000원	6	* 농어촌특별	세 금 00,0) () () 원	
⑦ 세 액	합 합 계	금	I		000,000	원	
		금			150,000	원	
⑧ 등 기 신	청 수 수 료	납부번호	: 0	0-00-0	000000	O-O	
		일괄납부	- :	건		원	
	9	첨 부	入	면 면			
• 취득세(등록	면허세)영수필확여	인서 <i>1</i> 통	<기E	}>			
・등기신청수	수료 영수필확인	l서 1통					
• 집합건축물1	대장등본	1통					
• 주민등록표	등(초)본	1통					
· 위임장		통					
	2	2013년	5월	1일			
⑩ 위신:	청인 이	대	ſσĦ	()	전화 : 300-7766	5)	
(또는	·)위 대리인				(전화:)	
서	욱중앙 지방법	원			등기국 귀중		

삭/행

- 신청서 작성요령 -

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런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 2.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.



별 지

1동의 건묵의 표시

서울특벽시 서초구 서초동 100

서욱특병시 서초구 서초동 101

샛벽아파트 가동

[도 한 명구소]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각 10

천근콘크니트조 슾내브지붕 5층 아파트

1 층 245 m²

2 층 245m²

3 층 245 m²

4 층 245 m²

5 층 245㎡

전유부분의 건묵의 표시

1. 건물의 번호 1-101

구 조 청근콘크리트조

12=(적 1층 101호 86.03㎡

3. 건묵의 번호 2-201

조 청근콘크리트조 구

124 적 2층 201호 86.03㎡

5. 건물의 번호 3-301

구 조 첫근콘크니트조

적 3층 301호 86.03㎡ 154

7. 건묵의 번호 4-401

조 첫근콘크니트조 구

적 4층 401호 86.03㎡ 154

9. 건물의 번호 5-501

조 청근콘크니트조 구

각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

토지의 표시

1.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1,400 m²

2. 서욱특벽시 서초구 서초동 101 대 1,600 m²

대지권의 종류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육 1.2 : 3,000분의 300

등기원인과 그 연월의 2011년 10월 4일 대지권

2. 건묵의 번호 1-102

구 조 청근콘크리트조

먣 적 1층 102호 86.03㎡

4. 건묵의 번호 2-202

조 청근콘크리트조 구

125 적 2층 202호 86.03㎡

6. 건물의 번호 3-302

구 조 첫근콘크니트조

적 3층 302호 86.03㎡ 154

8. 건묵의 번호 4-402

조 척근콘크니트조 구

154 적 4층 402호 86.03㎡

10. 건묵의 번호 5-502

구 조 청근콘크리트조

적 5층 501호 86.03㎡ 면 적 5층 502호 86.03㎡



등기신청안내서 -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

■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란

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을 개설하기 위하여 하는 최초의 등기로, 1동의 건물전체에 대한 등기와 전유부분(각 부분)에 대한 등기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. 아파트에 대한 등기가 그 대표적 예입니다.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
■ 등기신청방법

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합니다.

■ 등기신청서 기재요령

※ 신청서는 항극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. 부동산의 표시산이나 신청인산 등이 부족항 경우에는 벽지륵 사용하고, 벽지륵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(신청 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)을 하여야 합니다.

① 부동산의 표시란

⑦ 1동의 건물의 표시

1동의 건물 전체에 관한 것으로, 집합건축물대장등본을 참고하여 1동의 건물 전체의 소재와 지번, 도로명주소, 구조, 종류, 면적(구조상 공용부분을 포함하되, 전체의 면적을 충별로 표시)을 기재하고,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, 건물에 명칭이 있는 때에는 그 명칭을 기재합니다.

- ①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번호, 구조, 면적과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되, 구분건물의 구조가 복식건물인 때에는 그 표시를 합니다.
- ©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, 대지권의 종류, 비율,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을 기재합니다.
 - (i)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일련번호, 토지의 소재, 지번, 지목, 면적을,



- (ii)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, 지상권, 전세권, 임차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 재하며,
- (iii)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을 기재하고,
- (iv) 등기원인은 "대지권"으로, 그 연월일은 1동의 건물의 신축일 등 대지권 발생연월일을 기재합니다.
- (v) 대지권의 내용이 각 전유부분별로 동일한 때에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를 일괄하여 표시한 다음에 대지권의 표시를 하여도 무방하지만,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전유부분마다 대지권을 별도로 표시 하여야 합니다.

② 둥기의 목적란

"소유권보존"이라고 기재합니다.

③ 신청근거규정란

- ☞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할 경우에는 "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",
- 마 관결에 의할 경우에는 "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",
- ⓒ 수용에 의할 경우에는 "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3호",
- 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할 경우에는 "부동산 등기법 제65조 제4호"라고 기재합니다.

④ 신청인란

소유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기재하되,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공유자별로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기재하고, 각자의 지분을 표시합니다.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, 본점(주사무소 소재지),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,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, 본점(주사무소 소재지),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(관리인)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.

⑤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,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란,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

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하지 않으므로 이란은 기재하지 않습 니다.

⑥ 취득세(등록면허세)·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란

취득세(등록면허세)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하며,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.

⑦ 세액합계란

취득세(등록면허세)액, 지방교육세액,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.



⑧ 등기신청수수료란

- ⑦ 부동산 1개당 15,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,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, 전자납부,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 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.
- ①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 료,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,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(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).

⑨ 첨부서면란

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.

⑩ 신청인등란

- ② 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하되, 신청인이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와 대표자(관리인)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(관리인)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.
- ①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.

■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

< 신청인 >

위임장

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.

② 건물도면

- ⑦ 건축물대장등본이 첨부되지 않았을 때에는 1동의 건물의 소재도, 각층의 평면도 와 전유부분의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- ① 1동의 건물의 소재도는 건물의 번호·방위·건물의 대지의 경계·지번 및 인근 토지의 지번 등을, 각층의 평면도는 주위의 길이·면적 및 전유부분의 배열상황을,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는 주위의 길이·면적 및 구분상황을 기재하며 전부 검은 선과 검은 글씨로 하되 등기의 목적 외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붉은 선, 붉은 글씨로 작성합니다.
- 때 도면은 인터넷등기소 영구보존문서 등록에서 도면을 전자문서로 변환한 후 신청



인 또는 대리인의 전자서명을 부여하여 등록하고, 부여된 등록문서번호를 신청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기재(예 : [등록문서번호 : 100번])하는 방법으로 제출합니다. 단,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신청을 직접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③ 규약 또는 공정증서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규약상 대지인 때, 대지권의 비율을 각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과 다르게 정한 때,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경우에 첨부합니다.

< 시·구·군청, 읍·면 사무소, 동 주민센터 >

① 취득세(등록면허세)영수필확인서

시장, 구청장, 군수 등으로부터 취득세(등록면허세)납부서(OCR용지)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(등록면허세)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취득세(등록면허세)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(등록면허세)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,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출력한 취득세(등록면허세)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.

② 집합건축물대장등본

부동산의 현황 및 신청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(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.

③ 주민등록표등(초)본

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(각,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을 첨부합니다.

④ 기타

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인 제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기 본증명서,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(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을 첨부합니다.

<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, 금융기관 등 >

등기신청수수료

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(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)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(신용카드, 계좌이체, 선불형지급수단)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 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,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 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를 첨부합니다.



< 등기과 · 소 >

법인등기사항전부(일부)증명서

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(각,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를 첨부합니다.

< 기 타 >

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, "대법원 종합법률정보 (http://glaw.scourt.go.kr)"의 규칙/예규/선례에서 『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, 등기예규 제1393호』및 『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, 등기예규 제1435호』등을 참고하시고,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,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나 등기과·소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

신청서, 취득세(등록면허세)영수필확인서,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, 위임장, 주민등록표등(초)본, 집합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.